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차해영 의원 외 6명
- 제안일 : 2025. 11. 14.
- 회부일 : 2025. 11. 18. (의안번호 : 25-150)

2. 제안이유

- “마포구 가족센터”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마포구 가족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위법 개정 시행(2025. 10. 23.)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조례의 목적 정비 및 명칭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 센터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3조, 제5조,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5조의2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 2025. 11. 7.~11. 12. (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차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마포구 가족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위법 개정 시행(2025. 10. 23.)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및 여성가족부 「2021년 가족 사업 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 특별시 마포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라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기반으로 기능을 개정·추가하고,
 - 안 제5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추가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 안 제13조 시행규칙은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되어 삭제하려는 것임.
-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가족센터”로 통합·운영하는 배경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모두 본질적으로 가족과 관련된 상담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 서비스 제공기관임에도 가족 유형별 시설 구분으로 인해 특정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여성가족부는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가족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2018년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로 일원화하였음

- 이어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이 2025. 4. 22 개정되어 제35조의2(가족센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법률상 용어와 조례의 명칭을 일치시킬 필요성이 발생하여 우리구도 상위법령에 맞추어 「마포구 건강가정지원 센터」에서 2018년부터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로 운영되었고, 2022년부터 「마포구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이며, 2024년 기준 가족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모두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임
- 종합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실제 운영현황에 맞추어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개정을 통해 법적 정합성과 행정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가족 지원 서비스의 포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가족정책과	송희옥 (8910)	이윤선 (8931)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통행국 가족정책과 박완정
연락처	02-3153-8933

참고자료

1.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 · 가정학 · 여성학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 센터의 조직 · 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 ·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가정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가정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문화가족지원법(약칭:다문화가족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 · 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2. 마포구 가족센터 개요 및 명칭 변경 연혁

○ 마포구 가족센터

- (목적)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시설명	위치	위탁운영기관	사업내용	예산 (백만원)
마포구 가족센터	마포구 양화로 19, 지하2층	마포복지재단 (2024.1.~2028.12. .) <직원2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가정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 아이돌봄 지원사업 - 공동육아나눔터 등 	5,058

○ 마포구 가족센터 통합 추진 경과

- ▶ 2007.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마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
 - ▶ 2018.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 운영기관 선정
 - ▶ 2022. 마포구가족센터 명칭 변경